

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 
행정·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  
【2022. 9. 14.(수) 10:00】

기획재정국  
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
**검 토 보 고 서**  
(통합재정안정화기금)

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 
행 정 · 재 무 위 원 회

#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## 검 토 보 고

(통합재정안정화기금)

2022년 9월 14일

전문위원 장 석 현

### 1. 기금 설치 개요

- 기 금 명: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<sup>1)</sup>
- 설치근거: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- 설치목적: 각종 회계·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
- 설치년도: 2021년
- 소관부서: 기획예산과

### 2. 기금 조성 규모

(단위: 천원)

기 금 명	2021년도말 조성액	2022년도 조성계획			2022년도말 조성액
		수입(A)	지출(B)	증감(A-B)	
통합재정 안정화기금 (통합계정)	24,000,000	38,050,474	13,000,000	25,050,474	49,050,474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90억 5,047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50억 5,047만 4천원이 증액되었음

#### 1) < 기금의 조성재원 및 용도 >

구 분	조성재원	기금용도
통합재정안정화기금 (통합계정)	- 다른 회계·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- 예탁금 원금·이자수입 등	- 다른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 - 예수금 원금·이자 상환 등

### 3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#### ◆ 기금운용 수입계획

(단위: 천원)

항목	수입액	기정액	비교증감
합 계	62,050,474	24,696,713	37,353,761
예치금회수	24,000,000	24,000,000	0
예수금	37,480,185	404,619	37,075,566
이자수입	570,289	292,094	278,195

#### ○ 수입계획의 변경은

기정액 246억 9,671만 3천원 대비 373억 5,376만 1천원이 증가한  
620억 5,047만 4천원으로

- 예수금은 일반회계에서 367억 8,876만 7천원,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억 8,679만 9천원 총 370억 7,556만 6천원의 여유자금을 예수
- 이자수입 2억 7,819만 5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함

#### ◆ 기금운용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지출액	기정액	비교증감
합 계	62,050,474	24,696,713	37,353,761
예치금	49,050,474	11,696,713	37,353,761
예수금원리금상환금	13,000,000	13,000,000	0

#### ○ 지출계획의 변경은

기정액 246억 9,671만 3천원 대비 373억 5,376만 1천원이 증가한  
620억 5,047만 4천원으로 예수금 및 이자 수입 전부를 통합계정에  
예치하고자 함

#### 4. 종합의견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정책사업인 재무활동(예치금) 지출액을 당초(116억 9,671만 3천원) 대비 319.4%, 373억 5,376만 1천원을 증액하여 490억 5,047만 4천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<sup>2)</sup> 규정에 따라 지출금액이 20%를 초과하게 되어 강서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
  
-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과 이자수입 373억 5,376만 1천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치하고자 제출된 안건임
  
- 다만,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불균형의 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관리에 기여하고 있으나 구금고에 과도하게 예치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요구됨

---

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**< 예산과 기금의 비교표 >**

구 분	일 반 회 계	특 별 회 계	기 금
설치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활동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특정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</li> <li>▪ 특정사업 운영</li> <li>▪ 특정자금 보유 운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특정목적 및 시책 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</li> </ul>
재원조달 및 운용형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공권력에 의한 지방세 수입과 무상적 급부의 제공이 원칙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출연금,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용자사업 등 수행</li> </ul>
확정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사업부서 예산요구, 예산부서 예산안편성, 지방의회 심의·의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좌 동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 예산부서 협의·조정, 지방의회 심의·의결</li> </ul>
집행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집행과정에서도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</li> <li>-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원칙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좌 동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집행과정에서는 합 목적성 차원에서 자율 성과 탄력성이 보장</li> </ul>
수입과 지출의 연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좌 동</li> </ul>
계획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추경예산 편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좌 동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주요항목(분야·부문·정책사업) 지출금액의 20% 초과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</li> </ul>
결 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지방의회 심의·승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좌 동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좌 동</li> </ul>